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26
----------	------

발의연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고희근 의원 외 4명

1. 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3조)
-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안 제4조~제7조)
- 라.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을 규정(안 제8조~제13조)
 -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홍보 등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근거법규

- 가. 「협동조합기본법」

5.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 : 2013. 10. 8. ~ 10. 14.(5일간)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와 제2항의 교육훈련을 민간단체나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의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1회-본회의제2차부록)

제10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2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10. 8.(월)
- 제출자 : 고호근의원 외 4명
- 위원회회부 : 2013. 10. 14.(화)
- 위원회심사 : 2013. 10. 16.(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고호근의원)

가. 제안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3조)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안 제4조 ~ 제7조)
-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을 규정(안 제8조 ~ 제13조)
 -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홍보 등

4. 근거법규

「협동조합기본법」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석기)

- 본 조례안은 2012. 12. 1일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